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홍지광 의원)

의안 번호	23-79
----------	-------

발의년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고병준, 권인순,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한동,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사.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관계법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
- 2) 「청년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입법예고: 2023. 5. 19. ~ 5.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

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

3.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
 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4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관 계 법 령】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재정지원)에 따라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9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해당사업 추진 시 비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추진 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이효진
연 락 처	02-3153-8642